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총계 “4,889”를 “4,9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89”를 “4,9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17”을 “4,529”로, 전문경력관 “366”을 “371”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6)란 다음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89</u>	<u>4,906</u>	+17
일반직 계	<u>4,889</u>	<u>4,906</u>	+1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17</u>	<u>4,529</u>	+12
전문경력관	<u>366</u>	<u>371</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